

2020

주거약자와의 동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 안내

개정판





# 2026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안내

- 2026. 개정 -

주 택 정 책 과

# 목 차

【 2026년 주택바우처 지급 대상과 기준 】 .....	1
1. 사업 개요	
가. 시행 목적과 경위 .....	2
나. 사업의 주요 내용 .....	6
2. 시행 원칙 및 지원 대상자의 의무	
가. 운영 원칙 .....	11
나. 지원 대상자의 의무 .....	12
3. 신청 및 접수	
가. 신 청 .....	13
나. 신청 시 안내사항 .....	15
다. 접 수 .....	17
4. 신청 조사 및 확인 조사	
가. 조사의 원칙 및 자료 제출의 요구 .....	18
나. 지원 가구의 결정 .....	19
다. 조사의 유형 .....	22
5. 지 급	
가. 지급 결정 및 통지 .....	27
나. 지급 방법 .....	28
6. 지원 가구 관리 및 부당이득 환수	
가. 지원 가구의 관리 .....	30
나. 부당 이득의 환수 .....	33
붙임1. 시행 근거 .....	36
붙임2. 관련 서식 .....	38
붙임3. 주거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의뢰서 .....	46
붙임4. 주거복지 관련 기관 연락처 .....	47

## 2026년 주택바우처 지급 대상과 기준

###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

구분 \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25년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2026년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8인 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

### 【 2026년도 서울형 주택바우처 선정 기준 중위소득 】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단위 : 원)

구분 \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25년	1,435,208	2,359,595	3,015,212	3,658,664	4,264,915	4,838,883	5,393,057
2026년	1,538,543	2,519,575	3,215,422	3,896,843	4,534,031	5,133,571	5,709,090

※ 2026년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575,519원씩 증가

# 1 >>> 사업 개요

## 가 시행 목적과 경위

### □ 시행 목적

-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 시행 경위

- '01.10. 6.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 결과 시장님 지시 사항 시달
  - 지시 사항 : 방배동 비닐하우스 화재 관련 사후 대책 수립 지시
- `02. 1. 5.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개정 (제3960호)
- `02. 2.25.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시행규칙」 제정(제3241호)
- `02. 5. 1. 「저소득 시민에 대한 임대료 보조금 지급 계획」 수립
  - ※ 시장 방침 제489호 / 주택기획과-401385(2002. 5. 1.)
  - 지급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서 공공부문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각1호에 해당하는 자
  - 지원 금액 : 28천원(2인 이하), 40천원(3~4인), 53천원(5인 이상)
- `03. 3.15.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정(제3300호)
  - ※ `03. 3.15.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시행규칙」 폐지
- `10. 3.10. 「서울형 주택바우처」 추진 계획 수립
  - ※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0호 / 주택정책과-3875호(2010. 3.10.)
  - 변경 사항 : 기존 임대료보조는 “소득 단일기준”으로 지급해왔으나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소득기준” 외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 추가
- 10. 6.28. 「저소득층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추진계획」 수립
  - ※ 서울특별시시장 방침 제237호 / 주택정책과-10066호(2010. 6.28.)

- 주요 내용 :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0호 보완, 일반바우처 및 특정바우처 제도 도입(안), 임대주택 가액 기준 도입 (지원기준 : 임대주택가액 6,000만원\* 미만 지원)
  - \* 임대주택 가액 산정방법: 임대보증금 + (월세 × 50)
- 지원 금액 : 43천원(2인 이하), 52천원(3인~4인), 65천원(5인 이상) [지원기간 : 2년]
- `13. 3.26.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 개선 및 사회복지기금 시행규칙 개정 계획」 수립
  - \* 행정2부시장 방침 제38호 / 주택정책과-2023호(2013. 3.26.)
  - 지원 금액 : 43천원(1인), 47.5천원(2인), 52천원(3인), 58.5천원(4인), 65천원(5인), 72.5천원(6인 이상)
    - \* 전세전환가액 7,000만원 이하 지원 (임대보증금 + (월세 × 50))
- `16. 2. 1.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 개선 및 사회복지기금 시행규칙 개정 계획」 수립
  - \* 행정2부시장 방침 제26호 / 주택정책과-22102호(2016. 2. 1.)

**【 주요 변경 내용 】**

구분	기 준 (~2015년)	변 경 (2016년)
지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li> <li>-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li> <li>- 법정 차상위계층,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우선 지원</li> </ul>
지원 금액	1인 43천원, 2인 47.5천원, 3인 52천원, 4인 58.5천원	1인 50천원, 2인 55천원, 3인 60천원, 4인 65천원 (가구원 수별 3.4%~16.2% 인상)
지원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계속 거주 1년 이상 가구</li> <li>- 전세 전환가액 7,00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식: 월세×50 + 보증금</li> </ul> </li> <li>- 차량 2대이상 소유가구 미지원</li> <li>- 옥탑, 지하방 거주가구 미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계속 거주 기간 삭제</li> <li>- 전세 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식: 월세×75 + 보증금</li> </ul> </li>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량 지원 기준 적용</li> <li>-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거주 가구 지원</li> </ul>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주거문제 미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바우처 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보장시설 퇴소가구 한시적 임대료 지원</li> </ul> </li> </ul>
대상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차 계약 관계 확인, 가구방문 미실시</li> <li>- 변동조사 미흡 관리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바우처 가구 주택조사 시범실시 (3개구 이상)</li> <li>- 연 1회 확인조사(행복e음 활용) 철저 및 감면 제도 도입</li> </ul>

○ `19. 3.11.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대 지원 계획」 수립

※ 행정2부시장 방침 제60호 / 주택정책과-4530호(2019. 3.11.)

- 변경 사항 : 기존 지원대상인 '주택'거주자 외에 '준주택(고시원)'거주자 추가 지원, 고시원 거주 대상자 최초 신청 조사 시 실 거주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
- `19. 3.22. 「고시원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 수립 (지원대상자 고시원 거주자까지 확대)
- `19. 5.23.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 (고시원 거주자 지원의 필요성 인정)
- `19. 5.30.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 및 공포

○ `19. 6.27. 2019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침 개정 및 사업 운영 계획 수립

《 주요 변경 사항 》

- ❖ 지원대상 : (기존) 주택 거주자 → (변경) 주택 및 고시원 거주자
- ❖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주택조사 신설 : 신규 신청 시 현장 방문 확인
- ❖ 금전채권 압류된 자의 대리수령 : 제3자 명의 계좌 지급 불가 조항 명확화
- ❖ 주거복지센터로의 사례관리 서비스 안내 및 의뢰 권고 조항 추가

○ `20. 4. 1. 2020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금액 상향 지원 시작

※ 2020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 개선 계획 (주택정책과-532호(2020.1.8.))

《 주요 개선 사항 》

- ❖ 일반바우처 월 지원금 상향 : (기존) 월 5만원 → (변경) 월 8만원
- ❖ 특정바우처 신청 및 지급 방법 변경 : 일반바우처와 동일

○ `20. 9. 1. 2020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선정방식 변경(소득평가액) 적용 시작

※ 2020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 2차 개선 계획(주택정책과-7969호(2020.4.14.))

※ 2020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사업 2차 개선 시행 및 확인조사 실시 계획

《 주요 개선 사항 》

- ❖ 선정기준 변경 : (기존) 소득인정액 방식 → (변경) 소득평가액 및 별도의 재산기준 방식
- ❖ 전세전환가액 기준 변경
  - (기존) 전세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 보증금 + (월임대료×75)
  - (변경) 임대보증금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소액보증금 기준 이하 (1억1천만원)

- `21.8.26. 「2021년 서울형 아동주택바우처 운영계획」 수립 (주택정책과-2034호(2021.8.26.))
  - `21.4.30. 2021년 아동주택바우처 신설 계획 수립 (주택정책과-8160호(2021.4.30.))
  - `21.4.30.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요청 (주택정책과-8127호(2021.4.30.))
  - `21.7.28.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2961호(2021.7.27.))
  - `21.10. 「2021년 서울형 아동주택바우처」 시행

- `24.6.20.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개선 계획」 수립 (주택정책과-11230호(2024.6.20.))
  - `24.4.22. 서울형 주택바우처 개선방안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계획 수립 (주택정책과-7641호(2024.4.22.))
  - `24.6.26.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요청 (주택정책과-11473호(2024.6.26.))
  - `24.8.13.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 (주택정책과-2726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4149호(2024.8.13.))
  - `25.1. 서울형 주택바우처 금액 상향 지급

《 주요 개선 사항 》

- ❖ 일반바우처 월 지원금 상향 : (기준) 월 8만원(가구 1인 증가시 5,000원 증액) → (변경) 월 12만원(가구 1인 증가시 10,000원 증액)
- ❖ 아동바우처 월 지원금 상향 : (기준) 아동1인당 월4만원 → (변경) 월6만원
- ❖ 재산가액 변경 : (기준) 재산가액 1억6천만원(금융재산 6,500만원 초과 제외) → (변경) 재산가액 2억원(금융재산 8,000만원 초과 제외)

- `24.12.17. 「쪽방시설 퇴거(소)자 바우처 사업 종료 계획」 수립(주택정책과-9298호(2024.12.17.))

《 주요 변경 사항 》

- ❖ 쪽방·시설 특정바우처(구 명칭: 기존 특정바우처) 사업 폐지

## □ 관련 법규

- 주거기본법 제15조 (주거비 보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9조 (주거지원계정)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장 (주거지원계정자금의 대출 등)

## □ 지원 대상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일반바우처 ①~④, (아동)특정바우처①~⑤】

## ○ 지원 기준

## ① 민간 (보증부)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고시원: 「주택법」 상 ‘주택’과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의미
- 건물 일부만 ‘주택’인 경우 거주지 부분이 ‘주택’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포함\*되나, 단순 일부 방만 임차한 경우는 제외
  - \* 주민등록 등재, 주거용 여부를 자치구 공무원 확인 후 지원
- 고시원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은 지원하지 않음
  - \* 단, 건축물 대장(공부)상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중복기재되어 있어 임차시설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택 거주로 인정하여 지원 가능

## ② 임대보증금이 1억6천5백만원(「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이하인 가구

- \* 임대차계약서 상 ‘기재된 금액’ 기준으로, 대출 등 개인의 재무상황은 고려하지 않으나 보증금 지분에 대한 소유관계가 명확하게 명시된 경우, 지원대상자 소유 지분만 적용 가능
- \* 기존 사용하던 전세전환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대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 여부만 확인

③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소득 및 재산 조사 방법 및 소득평가액 기준에 대해서는 본 지침을 우선 적용하며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순으로 준용
  - \* 단, 사적이전소득(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함
  -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

④ 재산가액이 2억원 이하인 가구

- 재산가액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자동차 기준 : 차량 종류 불문, 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제외
- 금융재산 : 8,000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 \* 단, 청약저축 · 주택청약보험저축 · 보험은 금융재산에서는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⑤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가구 내 만18세 미만 아동

- \* 「아동복지법」 상 아동의 나이 기준

**【 차량 소유 예외 기준 】**

- ① 자동차 분실·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 또는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제출하는 경우
- ② 명의도용·명의대여 자동차, 대포자동차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
- ③ 관공서 및 법인의 미등기 자동차로 자동차 등록증에 대표자 성명 외 상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로 대상자가 실제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는 소유 차량 대수에 미포함 (사용·수익 여부 확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준용)

○ 보장가구의 결정

- 보장단위, 별도가구에 대한 특례,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자는 본 지침을 우선 적용하며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순으로 지침을 준용하여 적용
  -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별도가구특례, 소득공제 사항, 이자소득 미반영, 기타산정재산 미반영 등 신청자에게 유리한 항목이 많기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우선 적용함
  - \* 맞춤형 급여에서 별도가구로 인정받은 경우 나머지 비수급 가구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 및 지원 불가능함에 유의

○ 지원 제외(중단)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제외
  - \* 단, 가구원 중 일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가구원은 지원 가능
  - \* 교육급여 수급자는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조사 및 지원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 \* 국민임대, 장기전세, 재개발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장기안심,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등
-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신청인의 동거인 (지원가구원의 형제·자매는 지원 가능)
- 차량 종류 불문, 조사 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차량 소유 예외 기준 】**

- ① 자동차 분실·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 또는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구청 발급) 제출하는 경우
- ② 명의도용·명의대여 자동차, 대표자동차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
- ③ 관공서 및 법인의 미등기 자동차로 자동차 등록증에 대표자 성명 외 상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로 대상자가 실제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는 소유 차량 대수에 미포함 (사용·수익 여부 확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준용)

□ 지원 금액

【 2026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금액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일반 바우처	120,000원	130,000원	140,000원	150,000원	160,000원	170,000원
특정 바우처(아동)	X	아동 1인당 6만원				

【 서울형 아동(특정)바우처 포함 지원 금액 】

《예시1 : 보호자가 1인인 가구의 지원금액》

구 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이상
보호자(일반)	120,000원(1인)	120,000원(1인)	120,000원(1인)	120,000원(1인)	120,000원(1인)
아 동(특정)	60,000원(1인)	120,000원(2인)	180,000원(3인)	240,000원(4인)	300,000원(5인)
합 계	180,000원	240,000원	300,000원	360,000원	420,000원

《예시2 : 보호자가 2인인 가구의 지원금액》

구 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이상
보호자(일반)	130,000원(2인)	130,000원(2인)	130,000원(2인)	130,000원(2인)	130,000원(2인)
아 동(특정)	-	60,000원(1인)	120,000원(2인)	180,000원(3인)	240,000원(4인)
합 계	130,000원	190,000원	250,000원	310,000원 <sup>2026</sup>	370,000원

【 「주택법」 상 주택과 준주택의 구분 】

구분	주택	준주택
정의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 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
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p>「건축법 시행령」 별표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호라목에 따른 <b>기숙사</b></li> <li>2.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b>다중생활시설</b></li> <li>3.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b>노인복지주택</b></li> <li>4. 제14호나목2)에 따른 <b>오피스텔</b></li> </ol> <p>⇒ 주택바우처에서는 “2. 다중생활시설(고시원)”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p>
비고	건축물대장 건물내역 확인 시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등 ‘주택’임이 표기됨	건축물대장 건물내역 확인 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표기됨

※ 2009년 이후 건축된 오피스텔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임. 외관은 오피스텔과 유사하므로 건축물대장 확인이 필요함에 유의

## 2 >> 시행 원칙 및 지원 대상자의 의무

### 가 운영 원칙

#### □ 기본 원칙

- 본 지침에 의하여 신청·조사하며, 해당 사업 지침 상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순에 따름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별도가구특례, 이자소득 미반영, 기타산정재산 미반영 등 신청자에게 유리한 항목이 많기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우선 적용함

#### □ 실소요 비용 지급의 원칙

-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은 주거 생활을 위하여 발생하는 실제 임대료에 대한 보전을 위한 제도로,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 전세 거주자는 지원하지 않음
- 월세가 지원금액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는 실소요비용만 지급함

\* 예시 :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금액인 월세가 50,000원인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실소요비용 원칙에 따라 50,000원만 지급함

#### □ 타 주거 지원 우선의 원칙

-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은 기존 주거지원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등 타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지원하지 않음

-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지원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거주 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 내용 등이 변동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신고의 의무)
  - 신규 지원 대상자에게 필히 안내, 기 지원 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
-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관계 서류 제출과 실 거주 관련 조사 등 주택바우처 지원을 위한 행정 업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임대차 사실관계 및 임대료에 있어 부정, 불법, 허위 보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주택바우처 지원금을 임대료 지급 외에 타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가 신청

## □ 신청권자

- 신청(권)자 가구의 가구원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대리인
  -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 \* 대리 신청 시, 신청(권)자 가구원의 위임 필요(계약자 위임 우선)
    - \* 대리 신청 시, 제출 위임장은 특정 양식 없음
- 관계 공무원 : 담당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권자가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
  -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 \* 한부모 가정의 경우, 이혼한 전(前)배우자는 가구원으로 간주하여 이혼한 전(前)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함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
  - \* 묵시적 갱신 인정 요건 : 임대인에게 관련 서류(또는 유선통화 및 현장방문 등)로 사실 여부(계약일 이후 현재까지 임차인 거주 여부, 계약해지통보여부) 확인 후 인정
  - \* 단, 무보증 월세 주택은 확정일자 없는 계약서도 인정하되,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도장을 날인 받아 인정

○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 계약은 지원 제외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646호] 제2조 5호)

○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 (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시원 거주자의 경우 ‘고시원 입실확인서 및 영수증, 고시원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받아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로 인정 (서식5)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신청 공통사항 : 공적자료 조회 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증빙자료 제출 요구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및 기타 소득확인서류 등)

○ 신규신청 시(기 대상자의 거주지 등 변경 신청시에도 동일)

①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1부 (서식1)

② 소득재산 조사시 필요서류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중 택1  
(차상위계층 확인 및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중복 신청도 가능)

- (택1)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 (법정 차상위계층\*,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제외)

- \* 법정 차상위계층은 저소득한부모가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등의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함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자는 법정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지 않음)

- (택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1부

-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자와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중복지원이 가능한 바, 신청 조사 결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서류 제출 가능 여부 등을 추가로 상담한 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안내 권고

③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서식2)

-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고시원 입실확인서 및 영수증, 고시원 사업자등록증 등 1부
- ⑤ 건축물대장(신청인이 발급·제출이 곤란할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을 통해 같음)
- ⑥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발급·제출이 곤란할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을 통해 같음)
- ⑦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⑧ 신청자 통장 사본

※ 법적 차상위 계층이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가구(원)은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복 지원 가능함(기존에 조회된 소득·재산 사항을 재배정 신청 명단에 수기 입력 필요)

나

신청 시 안내사항

□ 처리 기간

- 30일 내에 주택바우처 실시 여부를 통보할 예정임을 안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 행정서버의 불안정 등 시스템 오류로 불가피하게 행정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 신청 조사 시 지원 대상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청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 신청 조사나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제출 서류 안내

- 신청서,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안내

□ 통지 방법

- 서면으로 통지(서식3)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병행하여 어르신·장애인 등의 문자해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 등으로도 통지할 수 있음을 지원 대상자에게 알리고 지원 대상자가 가장 적절한 통지방법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 □ 통지 내용(신고의 의무 안내)

○ 아래와 같은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원 대상자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고, 변동 사항에 따른 지원의 변동(중지)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 또한,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지급의 중지 및 기 지급된 금액에 대해 소급하여 환수됨을 안내

- 거주 지역, 세대 구성의 변동, 임대차 계약 내용(임대보증금, 월차임, 계약자 변경 등)등의 변동
- 소득의 변동,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 기타 지원 대상자의 가구특성 등 생활 실태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

※ 신규 지원 대상자에게 필히 안내(통지), 기 지원 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통지)

## □ 주택바우처 신청의 각하 및 중지

○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신청자 및 지원 대상자의 주택바우처 신청이 각하됨을 안내

○ 중지 사유

-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 지원대상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 주택바우처 지원 자격요건을 상실한 때
- 다른 시·도로 이주한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때
-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여 주택바우처를 중지한 경우의 주택바우처 재개 사유

- ▶ 대상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세 중 주택바우처 지급액을 지급한 경우
- ▶ 대상자가 조사기관에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세 중 주택바우처 지급액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대상자 및 임대인이 주택바우처를 직접 수령하는 것에 동의하여 월세 직접수령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 다 접수

### □ 신규(변경) 신청 등록

- 동 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담당자는 접수된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심사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
- 심사 완료된 서류는 스캔하여 등록하고 원본은 5년 간 보관

### □ 접수의 효력 발생 시기

-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된 때를 접수일로 하고 지원결정 시 접수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일이 다를 경우 자료 등의 제출이 완료된 날
  -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
- 자치구 조사 담당 공무원은 접수된 신청에 대하여 기한 내 조사 및 심사 완료
  - 30일 내에 주택바우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 4 >> 신청 조사 및 확인 조사

### 가 조사의 원칙 및 자료 제출의 요구

조사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안내」 순으로 지침을 준용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별도가구특례, 이자소득 미반영, 기타산정재산 미반영 등 신청자에게 유리한 항목이 많기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우선 적용함

#### □ 조사의 원칙

- 담당 공무원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최우선함
- 최초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2년 주기로 임대차계약서 확인 및 자동 갱신 사실여부 확인
- 신청서 접수 시 즉시 자치구 통합조사관리팀에 의뢰하며,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

#### □ 자료 제출의 요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지 않거나,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구
  - 통합관리시스템이나 관계 기관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사실 확인 후, 필요서류는 최소한으로 요구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보장단위: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함.

○ 보장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가구 범위 준용

【 보장가구의 범위 】

출처: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p32

가)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시행령 제2조]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보장가구에 포함하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반영 - 단,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되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이나,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의 경우 개인별 보장대상임.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가) (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나) (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다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면서 다음 ①~④의 경우에 해당하여,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부모 가구에서 분리하여 개별 보장 가능

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차상위계층 포함)인 부모와 동일 가구원인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③ 30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부모와 주거를 분리한 경우

④ 가족관계 해체의 사유로 부모와 동일 가구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

(다)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나 형제·자매가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 보장가구에 포함

○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동일주소라도 동거인은 제외하되, 2촌 이내 혈족은 동거인이라도 포함(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급여위탁 별도가구,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자립지원 별도가구 등 별도가구 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항을 준용함
- 한부모가구 별도가구 인정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단독 조항\*)
  -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상 가구가 주택바우처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한부모가구만 별도 지원 가능
  - 부, 모, 본인, 자녀2 (5인 가구)로 5인 가구가 주택바우처 선정기준에 초과할 경우, 한부모가구(3인)만 별도가구로 인정 지원 가능

□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나 지원 가구에서 제외되는 자(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준용)

-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 단,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
- 외국에 최근 180일간 60일을 초과하여 체류중인 사람
  -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조사 시작일 포함)까지의 기간 중 외국에 체류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60일(출국일 제외, 입국일 포함) 초과된 자는 외국 체류일수가 61일째 되는 날부터 보장가구에서 제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구치소·유치장·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 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자
-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이 주거급여 대상일 경우 해당 가구 미지원(서울형 주택바우처 단독 조항\*)
  - ※ 1개 거주지에 대하여 이중지원 불가
- “법정 차상위계층” 자격, “서울형 기초보장” 자격, 소득평가액 60% 이하 기준 중 어

는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가구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단독 조항\*)

- 단, 한부모 연령 초과, 군입대 등의 사유로 중지되었더라도, 소득조사(재) 결과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으로 보장받는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외 나머지 가구원은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조사 기준을 준용하여 조사 후 책정

## □ 가구범위 확정 절차

-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세대원)을 조회하여 일괄 등록
-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사람 중 동일 보장가구에 포함할 구성원 추가
  - 배우자(사실혼 포함), 30세 미만 미혼자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나 형제·자매가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
- 보장가구에서 제외할 가구원을 확인하여 삭제
  - 현역 군인,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90일 초과 체류, 교도소 구치소 수용중인 사람 등

## □ 신청조사

- 조사목적 : 주택바우처 신청 시 지원 자격 및 지급결정을 위해 실시
- 조사대상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
  - ※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순으로 지침을 적용하여 보장가구 결정 범위 준용
    -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별도가구특례, 이자소득 미반영, 기타산정재산 미반영 등 신청자에게 유리한 항목이 많기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우선 적용함
- 조사시기 : 신청서 접수 시 민원처리 기한 내 조사 처리
- 조사방법
  -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순으로 지침을 적용하여 소득·재산 조사 기준 적용
    -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별도가구특례, 소득공제 사항, 이자소득 미반영, 기타산정재산 미반영 등 신청자에게 유리한 항목이 많기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우선 적용함
    - \* “법정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법정 차상위계층” 자격 소지자는 추가적인 소득 재산 조회가 필요하지 않지만, 조사 시 “법정 차상위계층” 기준 안에 들지 못하는 가구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기준에 맞춰 추가 조사를 시행하여야 함  
→ 추가 조사 방법 : 조회된 소득·재산 자료를 토대로 수기 계산하거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신청 진행
  - 필요 시, 소득증빙자료 등 제출 요구
    - ※ 법정 차상위가구, 서울형 기초보장가구의 경우 소득 및 재산조회 제외하나 금융재산 초과 등 서울형 주택바우처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조사 단계에서부터 행복e음 전산 필수 입력
- 조사내용
  - 소득 및 재산
    - ※ 금융재산의 경우, 정보시스템에 기 파악된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 ※ 단, 주 소득원이 제도금융권이 아닌 소득(사채)에 대하여 반드시 금융재산 조회 (이 때, 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작성 후 금융재산 조회)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 여부 및 임대주택 거주여부 등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및 계약형태, 금액 등 확인

○ 주택조사

- 고시원 거주자의 경우 신청 시 자치구 담당자를 통한 실 거주 필수 확인
- ※ 매월 지급 전 본인 또는 고시원 관리자 등을 통해 실 거주 여부 확인 후 지급 (유선 확인 가능)

□ 확인조사

- 조사 목적 : 기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적정성을 확인
- 조사 시기 : 매년 1회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 수행
- 조사 대상 :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자 가구
- 조사 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자체 지원’ 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및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사업 탭 활용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직권조사 또는 재신청하여 소득조사
  - 확인조사 단계에서 전산 입력이 되지 않은 가구 발견 시 행복e음 전산 필수 입력
  - ※ 현재 행복e음 전산 입력이 되지 않은 가구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산 입력 시행
- 조사 내용
  - 소득 및 재산기준 적합여부 확인  
(기존 중위소득 60%이내 자격 대상자는 공적자료 요청하여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여부 및 임대주택 거주여부 등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및 계약형태, 금액 등 주택사항 확인
  - 아동주택바우처 대상가구 아동의 나이 확인

라

조사의 세부내용

□ 소득 조사

- 선정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구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단위 : 원)

가구규모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1,538,543	2,519,575	3,215,422	3,896,843	4,534,031	5,133,571	5,709,090

\* 8인이상인 경우 1인이 증가할 때마다 575,519원씩 증가

- 소득평가액 산정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준용
- 기초연금 소득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함 (서울형 주택바우처 단독 조항)
- 실제 소득 산정 시 다음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함(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준용)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이자소득
- 근로·사업 소득 40%를 공제 적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준용)

《근로·사업소득 공제내역》

공제 대상 수급(권)자	공제대상	소득 공제율
• 등록장애인	장애인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50% 추가공제
• 3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 65세 이상 노인 • 등록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40% 추가공제
•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40% 추가공제

- 그 외 소득 조사 관련 사항은 국기초 수급자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준용

## □ 재산 조사

- 선정 기준 : 재산가액이 2억원 이하인 가구 (금융재산 8,000만원 이하)
  - 재산가액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자동차 기준 : 차량 종류 불문, 조사 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 제외
  
- 재산의 종류는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포함),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으로 구분
  
- 재산조사 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준용
  
- 재산가액 선정 기준은 공적자료에 조회되는 가격을 토대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에서 임대보증금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는 적용률(0.95)을 곱하여 산출
  - 주택 임대보증금 = 전월세계약서 상 임대보증금 × 적용률(0.95)
    - ▶ 보정계수 설정취지 : 주택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나,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가액산정에 적용률을 곱하여 5%를 공제함
  -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선정조건인 “임대보증금이 1억6천5백만원(「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이하인 가구”의 임대보증금에는 상기 적용률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월세계약서 상 임대보증금을 전부 반영) (서울형 주택바우처 단독 조항)
  
- 금융재산 중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 산정에는 포함 (서울형 기초보장제 준용 사항)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
  
- 자동차 재산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차량가액을 재산으로 산정 (서울형 주택바우처 단독 조항)
  - 조사 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가구의 경우 지원 불가

- 만19세미만 자녀 양육가구 자녀 1인당 금융재산 최대 1,000만원 공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적용하는 기타 산정 재산은 산정 제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준용)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및 처분한 경우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음
  - 단, 조사 대상 가구의 3개월 내 처분한 재산은 필요시 증빙자료 등을 제출토록 하여 생활실태 및 재산은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필요시 일반재산으로 산정 가능)
- 기본재산액 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준용)
- 부채 차감 순서는 1순위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자동차 포함), 2순위 금융재산 순으로 차감 적용함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준용)
  - 단, 재산기준에는 적합하나 부채차감 순서(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에 따라 부채를 차감할 경우 금융재산 초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지)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차감 순서 변경 가능
  -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방생활보장위원회(소위원회 등)는 별도 구성없이 자치구에 구성되어있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 별도위원회를 이용

## 5 >> 지급

### 가 지급 결정 및 통지

#### □ 조사결과 통보

- 통합조사관리팀에서는 행복e음을 통해 신청인의 신청 내용에 대해 조사한 후 조사내역 사업 담당부서에 통보(연계서비스 지원)
- 사업담당부서는 대상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자 결정·통지
  - 수급자로 편입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
- 통지 시, 대상가구의 변동사항 발생에 대한 신고의무를 알림
  - 거주 지역, 세대 구성원 변동, 수혜가구의 소득·재산, 기타 수혜가구의 가구특성 등 생활 실태에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고, 변동사항에 따른 지원의 변동(중지)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 또한, 신고의무를 해태한 경우 지급 중지 및 소급 환수에 대한 불이익이 있음을 안내
- 신청인에게 서면통지(서식3)를 원칙으로 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통지 가능
- 담당부서에서는 지급금액 결정을 행복e음(임대료 보조서비스)에 등록

#### □ 통지 기한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 □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전액 지급

### ○ 소급지급 여부

- 예산부족으로 인한 과년도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예산으로 소급지급 불가(조례 시행규칙 제 16조 제2항, 제3항)

### ○ 특정바우처는 신청한 달(입주자) 또는 입주한 달(미입주자)부터 지급

### ○ 수급자 신청가구의 경우 지급 보류(수급자가구 미 책정 시 소급 지급)

## □ 바우처 지급 계좌 및 지급일

### ○ 지급계좌 : 주택소유자 또는 바우처 지원대상자 명의의 계좌

- 주택소유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조대상자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음(조례 시행규칙 제 17조 제1항)

※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및 지급 불가(서울형 기초 보장제 준용)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제3자 중 이해관계자(실제 수급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자의 계좌로 급여 지급 가능)

※ 제3자는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지계혈족, 3촌이내 방계혈족 이외의 자를 말함

### ○ 지급일 : 매월 25일

※ 25일이 토요일이거나 법정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 □ 금전채권 압류된 자의 대리수령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

36조의3을 준용하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음 (※제3자 명의 계좌로는 지급이 불가능함에 유의)

- 본인이 아닌 자가 수령할 경우, 대리수령인의 계좌를 신청서에 기재하고 대리수령 신청서 및 금전채권 압류 사실 증명서류 등 대리수령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① 필수 제출 서류/ ②,③,④,⑤ 중 하나 제출)

- ① 임대료보조 대리수령 신청서 (서식4)
- ②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명부
- ③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 ④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⑤ 기타 상기 사항에 준하는 입증자료로,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원대상자가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준용)

- 지원 대상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압류 등으로 통장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면 수급자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지원대상자가 알코올중독 등으로 사실상 의사무능력 상태라서 통장관리가 곤란한 경우
- 기타 급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급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대리수령 사항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준용

## 6 >>> 지원 가구 관리 및 부당이득 환수

### 가 지원 가구의 관리

#### □ 변동사항 관리

- 수급자의 소득·재산 및 인적변동 등 변동사항은 변동 “발생월”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임
  - 단, 발생월의 정보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확인월”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 ※ 해당 공적자료가 없거나 자진신고 이전에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에도 “발생월” 기준으로 적용
- 부정수급 기간 및 보장기관의 귀책사유로 미지급된 급여에 대한 소급지급도 발생월부터 종료월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지원가구의 신고, 정기적인 신고, 정기적인 확인조사 등을 통해 지원 자격, 지원 금액 변동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관리
- 가구원, 소득 등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행복e음에 입력하여 관리하며, 관련서류는 별도 보관함(5년)
- 지원 후 신청자의 자격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공적자료 조회 및 변동사항 조사 실시

#### □ 확인 대상

- 지원가구의 거주지, 가구원수, 소득, 재산, 주소지 변경, 기초생활수급가구 여부, 임대차계약금액 및 유형의 변경 등

## □ 확인 방법

- 본인신고 :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 ※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의 경우 동일 세대인 경우에 한해 인정
- 공적자료 :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 변동사항 조회
- 확인조사 : 정기(일제)조사 연1회(상반기), 필요 시 수시조사
  - 법정 차상위자격이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격이 없는 기준중위소득 60% 대상자는 확인(정기)조사 시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을 신청하여 조사

## □ 변동사항 처리방법

- 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된 자 : 제외된 달까지 지급
- 수급가구나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로 선정된 자
  - 수급자가구로 선정된 경우, 그 달부터 지급 중지
    - ※ 주택바우처 대상자가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주택바우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주택바우처 지원금은 환수(반납)
  -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로 선정된 경우, 전입(입주)일 다음 달부터 지급 중지
- 수급자 신청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 지급보류
- 거주지 변경 시
  - 서울시 내 전출입 시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기존 자치구에서 지원
  - 서울시 외로 전출 시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보조금 지급
- 가구원 출생 시 : 출생일 기준으로 가구원 추가 보조금 지급

○ 수혜자 사망 시

- 사망일이 속한 달(실제 사망일)의 보조금 지급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된 보조비는 환수(반납)

※ 단, 사망한 자의 가구에 속하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예, 단독가구) 당월 지급대상자 확정 전에 확인한 경우는 지급 제외

○ 소득 변동 시 : 일제(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를 통해 지원기준 부적합으로 중지되는 경우, 중지된 달까지 보조금 지급

※ 단, 부당이득으로 판단될 경우 부당이득 사유가 발생한 월부터 전액 환수 조치

○ 아동의 나이 도래 : 만18세 생일 도래일이 속한 달의 전 달까지 지급(아동바우처)

□ 지원 중지자의 관리

- 지원 중지내역은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이력 조회(5년 이내)
- 지원 중지 5년 이후에는 지원 중지자 관리대상에서 삭제
- 지원 중지자의 재신청에 따른 조사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입 후 즉시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상의 소득 등 조사된 내용을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재확인하여 처리함
- 법정 차상위계층\* 자격이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격이 없는 기준중위소득 60%의 자는 정기 확인조사 시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을 신청하여 조사

\* 법정 차상위계층은 저소득한부모가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등의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함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자는 법정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지 않음)

## □ 부당이득

### ○ 부당이득의 범위

- 지원 가구의 허위, 지연 신고, 신고의무 불이행 또는 행정착오 등으로 지급되어야 할 지원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되었거나, 변동사항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부당 지급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당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

### ○ 부당이득의 확인 및 결정

- 자치구 통합조사관리팀 및 담당부서에서 공적자료 등을 이용하여 확인

### ○ 부당이득 확인 후 조치

-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 등을 확인하여 지원금 지급중지 및 부당이득 발생 월부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 부당이득 환수결정

### ○ 부당이득 환수대상

- 소득, 가구원수, 임대차계약 금액, 소득평가액 기준 등 지원대상기준에 관한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자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해외 체류기간 180일 이상자,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 가구원, 재소자, 실종자, 행방불명자 등

※ 해외 체류 기간 180일 이상자의 경우는 지급 중지하고, 출입국 기록은 있으나 해외 체류기간이 180일에 미치지 않는 경우 행복e음에 중점관리자로 등록·관리하고 비용의 출처 등을 확인

- 해외 체류기간 180일 이상자의 경우 본인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후 증빙서류(여권, 비행기 티켓 등) 징구 또는 필요시 G4C(행정정보공동이용)를 통해 출입국

사실에 대한 증명서를 열람(발급) 후 사실 확인

- 해외체류기간은 합산이 아닌 연속 180일을 의미하며, 180일 산정의 기산일은 출국일 그 다음날
  - 실종 및 행방불명자의 경우 법원 및 경찰서 협조를 통해 확인
    - ※ 법원 : 실종·부재 신고 신고증 등
    - ※ 경찰서 : 신고접수증, 가출인 수배부 등
  - 행정착오로 인한 과다 또는 중복지급 등
- 상계처리 : 급여를 반환받아야 하는 가구가 주택마우처 대상자일 경우 상계처리 가능
- 부당이득 환수 대상자 결정
- 본인신고 및 공적자료 갱신, 확인조사 시 부당이득 환수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당이득 환수 결정 및 절차 이행

## □ 부당이득 환수 절차

- 납부통지
- 부당이득환수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통지하고 납부일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부당이득 사실, 부당이득 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이의신청 방법 등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기 경과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
  - 이의 신청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청(구청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분할납부
- 자치구청장은 부당이득 환수 대상자의 소득 수준, 가구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토록 할 수 있음

○ 반납방법

- 당해 연도 환수·반납금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반납결의하여 직접 반납
- 지난 연도(회계마감일 이후) 환수분은 서울시에 환수 및 반납고지서를 공문으로 요청하여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담당자가 반납고지서 발급

□ 자치구 ‘생활보장위원회’ 활용 환수자 관리

○ 부당이득 환수 대상자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용관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 감면제도 실시 : 부당이득 환수 대상자 중 환수가 어렵거나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자치구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감면

- ※ 감면기준 : 구청장이 감면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 감면제도 실시 현황 제출 : 연 2회(6월, 12월)

○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7조 제1호

**제7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3.24., 2019.9.26., 2022.10.17., 2023.12.29.>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9조 제2항 제1호

**제9조(주거지원계정)** ② 주거지원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저소득시민, 장애인, 노인(65세 이상) 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장 주거지원계정자금의 대출 등

**제3장 주거지원계정자금의 대출 등**

**제1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4.7, 2017.2.23, 2017.4.6, 2019.5.30, 2025.1.20, 2025.7.1>

1.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준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말한다.
3. "임대보증금"이란 제5호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이를 공급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임차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임대료"란 제5호 이외의 주택 또는 준주택을 임차하고 매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말한다.
5.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란 국가·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시 자치구가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의 적용을 받는 영구임대주택은 제외한다.
6. "수급자"란 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말한다.
8. "소득인정액"이란 법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말한다.
9. "기준 중위소득"이란 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0.8.]

**제12조(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기준)** ② 임대료 보조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0,000원 이상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규모,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16.4.7, 2020.4.9, 2025.1.20>

**제13조(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 신청)** ②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임대료를 보조받으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0.8.19, 2019.5.30>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입실확인서 등 계약증빙자료
2. 보조신청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3. 예금통장 사본

[전문개정 2009.10.8.]

**제17조(임대료 보조금 지급 및 정산)**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임대료 보조대상자의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상계(相計)하는 조건으로 매월 25일에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임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 보조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개정 2010.8.19, 2017.4.6>

② 제16조제4항에 따라 연도 중 추가로 선정된 임대료 보조대상자에 대하여는 임대료 보조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한다.<신설 2010.8.19>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대료 보조금 지급현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16조제2항에 따른 교부액에 대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8.]

**제18조(임대료 보조대상자의 전·출입 등)** 구청장은 연도 중에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임대료 보조대상자가 시 내 다른 자치구로 전출 또는 전입하는 때에는 임대료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며, 임대료 보조대상자는 전입지에서 임대료 보조금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간의 전출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1.20>

[전문개정 2016.4.7.]

**제19조(대출 또는 보조결정의 취소 등)** ② 구청장은 임대료 보조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대료 보조결정을 취소하고, 과오지급된 때에는 반환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1.13>

1. 제11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때
2. 다른 시·도로 이주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때

[전문개정 2009.10.8.]

## 붙임2 >>> 관련 서식

### 【서식 1】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b>임대료 보조 신청서</b>					
신 청 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 . . (남/여)
	③주 소			④전화번호	자택 H.P
⑤신청구분	1. 기 지원대상자(전입 등)( ) 2. 신규신청 ( ) 3. 특정바우처 신청 ( )				
⑥가 족 수	( )명 [본인, 배우자, 자( 명), 부, 모, 조부, 조모, 기타( )]				
⑦세대구성 현 황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근로능력
					유·무
					유·무
					유·무
입주대상 임대주택	⑧위 치				
	⑨주택현황	침실수 : 개(거실겸용 포함) / 부속유무 : 유, 무(식사실 겸 부속 포함)			
	⑩임 대 료	임대보증금 : 원	월 임대료 : 원		
⑪주택 소유자의 동의서 (필수 기재사 항 아님)	<p>본인(임대료 보조대상자의 주택 소유자)은 위의 신청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임차 중임을 확인하며, 위의 신청인이 임대료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본인의 계좌에 월별 입금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로 수령하는 데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 . . . . 소유자 : (인)</p>				
⑫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p>「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임대료 보조금을 본인(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 . . . . 임차인 : (서 명)</p>				
	⑬계좌번호	은행명 : , 계좌번호 :			
<p>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임대료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기준 초과, 수급자 선정으로 인한 반환금 발생 포함)에는 해당 금액을 즉시 반환하는 것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임대료 보조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 . . . . 신청인 (서 명)</p> <p style="text-align: left;">서울특별시시장 귀하</p>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		필요시 제출서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p>1. 임대차(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서 사본 1부.</p> <p>2. 임차인 예금통장 사본 1부.</p> <p>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공의서(행정기관용)</p>		<p>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p> <p>2. 건강보험납입증명서</p> <p>3. 근로소득원천징수 및 소득확인 서류</p> <p>4. 부동산(토지)소유(미소유) 확인서</p> <p>5. 자동차 소유(미소유) 확인서</p> <p>6.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등</p>		수수료
				없음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서식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행정기관용)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주택임대료보조(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법령등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공부조,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주거·교육·고용 등 분야의 관련복지제도에 대한 수혜이력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본인이 속한 가구의 모든 세대원들은 서울형 주택바우처 급여 제공 및 확인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위 자료 및 정보를 정기·수시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이 속한 가구의 모든 세대원들은 업무 담당자가 대상자 선정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위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타 복지급여 관련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3. 동 건 사무의 처리 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 법령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공기관: 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연구기관
4.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 의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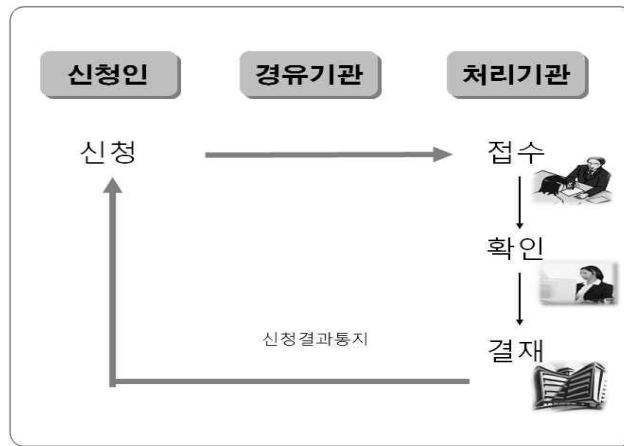
**【서식 4】 주택바우처 대리수령 신청서, 임대료 직접 수령 신청서**

<p>[     ] 주택바우처 대리수령 신청서</p> <p>[     ] 임대료 직접수령 신청서</p>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3일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신청 사유	<input type="checkbox"/>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input type="checkbox"/>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대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수급자가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수령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    개월간)				
※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수급자가 한정자산 또는 금치산 신고를 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법정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대리 (직접) 수령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수급자와의 관계						
지급계좌 금융회사(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 주택바우처 대리수령 [    ] 임대료의 직접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b>서울특별시</b>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재활용품)]

첨부서류	신청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수수료 없음
	1.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수급자가 피성년후견인인 사실 나. 수급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수급자가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사실 라. 수급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실 3. 신청인(대리수련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임대인인 경우	
	1. 임대차 계약서 2. 신청인이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등) 3.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임대료 중 주택바우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에 합의하고, 임대인이 임대료를 직접 수령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유의사항

주택바우처는 수급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식 6】 거주 사실 확인서

<b>거주 사실 확인서</b>						
신 청 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 . . (남/여)		
	③주 소		④전화번호	자택		
				H.P		
거주사실	비주택	<input type="checkbox"/> 쪽방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개월	
	사회복지 생활시설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시설		<input type="checkbox"/> 아동복지시설		
		<input type="checkbox"/> 노숙인시설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복지시설		
		<input type="checkbox"/> 노인복지시설		<input type="checkbox"/>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input type="checkbox"/>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회복지시설		
		입소일자	년 월 일	퇴소일자	년 월 일	
		입소일자	년 월 일	퇴소일자	년 월 일	
		입소일자	년 월 일	퇴소일자	년 월 일	
확인기관	현 황	명칭	소재지			
		시설 종류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 생활시설		<input type="checkbox"/> 쪽방상담소	
	시설장	성명	(상근, 비상근)			
	운영법인	법인명		대표자명		
	담 당 자	성명	연락처		사무실	
이메일						
<p>위 특정바우처 신청인의 상기 거주사실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 .</p> <p style="text-align: center;">확인기관 (기관명) (대표자명) (인)</p> <p>붙임 1. 주민등록등본(거주사실 증빙) 2. 시설 등록증(사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b>서울특별시장 귀하</b></p>						

# 【서식 7】 서울형 주택바우처 주택조사서

(조사서 양식)

[1면]

서울형 주택바우처 주택조사서										
신청자명		접수번호		접수일자		조사유형	<input type="checkbox"/> 신청조사 <input type="checkbox"/> 정기조사 <input type="checkbox"/> 수시조사			
가구주명		연락처(집)		연락처(휴대폰)						
주 소										
받은 쪽	1 차	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결과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부재 <input type="checkbox"/> 거부방해기피					
	2 차	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결과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부재 <input type="checkbox"/> 거부방해기피					
	3 차	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결과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부재 <input type="checkbox"/> 거부방해기피					
■ 본 조사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 자격 결정을 위한 주택조사로 조사 자체가 수급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임차인 등이 주택바우처를 수급함에 있어 필요한 임대차계약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권)자는 사회복지기금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조사된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됩니다. 아울러,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주택바우처 신청이 각하되거나 지급 중지될 수 있습니다.										
가구 현 황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나이(만)	가구주와 동거여부	연락처	비고		
가구원수			명							
임 대 차 확 인	계약서소제지									
	계 약 형 태	적합 (민간임대)	<input type="checkbox"/> 월세 (월임대료      원) <input type="checkbox"/> 보증부 월세 (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공공임대(□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기타) □사용대차 □보장시설 <input type="checkbox"/> 타법령 우선지원 주거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임양대상) □전대차계약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input type="checkbox"/> 쪽방 □여관여인숙 □비닐하우스 □판잣집 <input type="checkbox"/>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등) □그 외 기타(                      )							
	계약증빙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임대차계약서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서면확인서 <input type="checkbox"/> 사용대차확인서 <input type="checkbox"/> 제3자명의계약서(2촌 이내 친족) <input type="checkbox"/> 기타 [□ 입실서 □ 거주확인서 □ 영수증]							
	확정일자		<input type="checkbox"/> 확정일자 갱신 <input type="checkbox"/> 전세권 설정 <input type="checkbox"/> 없음				계약면적		m <sup>2</sup>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기간연장 : <input type="checkbox"/> )				계약면적확인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임차인의 부양의무자 <input type="checkbox"/> 제3자								
임 대 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비 고	<input type="checkbox"/> 유선확인(    년 월 일 시) □ 확인거부(    년 월 일 시) <input type="checkbox"/> 관계인 확인(관계:                      성명:                      서명/인 )								
임 차 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비 고	<input type="checkbox"/> 관계인 확인(관계:                      성명:                      서명/인 )								

외부 주택 현황	공부 상태	건물등기부등본 <input type="checkbox"/> 있음(소유자 : ) <input type="checkbox"/> 없음 건축물대장 <input type="checkbox"/> 있음(건축년도 : ) <input type="checkbox"/> 없음			
	주택 유형	주택 <input type="checkbox"/> 일반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다가구 주택 <input type="checkbox"/> 영업겸용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다중주택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 <input type="checkbox"/> 다세대주택			
	층 수	임차인 거주 층 ( ) / 건물 총 층수( )			
	출입구	<input type="checkbox"/> 단독사용 <input type="checkbox"/> 공동사용			
	방 수	침실용 방 ( )개, 주방( )개, 거실( )개, 주방겸거실( )개, 주방겸침실( )개, 화장실( )개			
내부 주택 현황	시설 기준	사용형태	종 류		
		부 역	<input type="checkbox"/> 단독사용 <input type="checkbox"/> 공동사용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입식 <input type="checkbox"/> 개량형 <input type="checkbox"/> 재래식	
		화장실	<input type="checkbox"/> 단독사용 <input type="checkbox"/> 공동사용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수세식 좌변기 <input type="checkbox"/> 수세식 변기 <input type="checkbox"/> 재래식	
		욕 실	<input type="checkbox"/> 단독사용 <input type="checkbox"/> 공동사용 <input type="checkbox"/> 없음	샤워 시설 :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온 수 :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난 방	<input type="checkbox"/> 설치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input type="checkbox"/> 중앙 <input type="checkbox"/> 지역 <input type="checkbox"/> 개별 <input type="checkbox"/> 기타	
		안 전	누전차단기 :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화재감지기 :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수 도	<input type="checkbox"/> 상수도 <input type="checkbox"/> 지하수 <input type="checkbox"/> 기타		
	환경	일조량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부족	침 수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심함
소 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심함	진 동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심함	
주거 의사	이사계획	<input type="checkbox"/> 계획 없음(재계약 희망) <input type="checkbox"/> 1년 이내 희망 <input type="checkbox"/> 2년 이내 희망			
	입주희망 공공임대	<input type="checkbox"/> 공공임대 <input type="checkbox"/> 재개발임대 <input type="checkbox"/> 국민임대 <input type="checkbox"/> 영구임대 <input type="checkbox"/> 다가구임대 <input type="checkbox"/> 전세임대 <input type="checkbox"/> 장기안심 <input type="checkbox"/> 문자 수신 동의 <input type="checkbox"/> 문자 수신 미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동의 (입주희망 공공임대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를 제공 받는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등 전세매입임대 사업시행자</li> <li>이용목적 : 입주희망 공공임대주택 사업안내</li> <li>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연락처</li> <li>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li> </ul>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ul>				
방 문 사 진					
	주택외관(날짜 - )	주택외관(날짜- - )	방문사실안내(날짜- - )		
<p>■ 특정바우처 신청자에 대한 주택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p>					
조사자	서명 또는 날인①	담당직원	서명 또는 날인②		

### 붙임3 >>> 주거안심종합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의뢰서

## 서비스 의뢰서

일시	20    년    월    일    시			접수자				
상담방법	<input type="checkbox"/> 유선 <input type="checkbox"/> 내방 <input type="checkbox"/> 방문 <input type="checkbox"/> 현장상담							
상담 경로	<input type="checkbox"/> 본인 직접							
	<input type="checkbox"/> 개인소개	소개자 :		연락처 :				
	<input type="checkbox"/> 관련기관	<input type="checkbox"/> 구청/주민센터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복지기관( <input type="checkbox"/> 이용시설 <input type="checkbox"/> 생활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관명 :                      담당자 :                      연락처 :                      >						
성명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가족수	명	
주소						연락처		
보호구분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 <input type="checkbox"/> 교육급여) <input type="checkbox"/> 조건부수급( <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 <input type="checkbox"/> 교육급여)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한부모 <input type="checkbox"/> 차상위장애수당 <input type="checkbox"/> 차상위자활 <input type="checkbox"/> 차상위본인부담경감)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기타(                      )							
가구유형	<input type="checkbox"/> 부부(일반, 노부부) <input type="checkbox"/> 부부+자녀(    명) <input type="checkbox"/> 2세대 동거 <input type="checkbox"/> 3세대 동거 <input type="checkbox"/> 단독세대(65세이상, 40세~64세, 19세~39세) <input type="checkbox"/> 한부모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경제상황	총 수입	월	만원	수입원	공적소득	근로소득	후원금	기타
	총 지출	월	만원	부채	<input type="checkbox"/> 유(금액 :                      만원/대출기관 :                      ) <input type="checkbox"/> 무			
주거현황	소유현황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보증부월세 <input type="checkbox"/> 무보증월세 <input type="checkbox"/> 일세 <input type="checkbox"/> 무상임대 <input type="checkbox"/> 더부살이 <input type="checkbox"/> 기타(                      )						
	건물유형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다세대주택 <input type="checkbox"/> 다가주택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임대주택(                      ) <input type="checkbox"/> 쪽방(여인숙) <input type="checkbox"/> 무허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						
요청 내용	<input type="checkbox"/> 소액보증금지원 <input type="checkbox"/> 임차료지원 <input type="checkbox"/> 주거환경개선 <input type="checkbox"/> 주거정보제공 <input type="checkbox"/> 기타(                      )							
	<호소하는 주된 문제 및 욕구>							

■                      란은 주거안심종합센터 실무자가 작성합니다.

결과	필요	<input type="checkbox"/> 소액보증금 지원 <input type="checkbox"/> 임차료지원 <input type="checkbox"/> 주거환경개서 <input type="checkbox"/> 주거정보제공 <input type="checkbox"/> 기타 ※후속약속 <input type="checkbox"/> 가정방문(일시:    년    월    일    시    )					
	불필요	<input type="checkbox"/> 정보제공대상(간접지원) <input type="checkbox"/> 타기관 의뢰 <input type="checkbox"/> 종결					
직접 지원 판정	판정 사유/소견 (처리결과)	*처리결과외의 경우 주거안심종합센터 외 의뢰건 또는 상담으로 종료된 경우 기록					

구분	센터명	연락처	주소
서울시 주거 안심종합 센터	중앙주거복지센터	02-2135-5690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1동 2층
	종로주거안심종합센터	02-722-8658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9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6층 607호
	중구주거안심종합센터	02-6909-9370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10 (신당동), 8층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02-6713-5055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한강로2가, 용산베르디움프렌즈 2층)
	성동주거안심종합센터	02-6990-52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21나길 5 (행당동), 2층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02-2138-8373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41, 공유공간 나눔 4층
	동대문주거안심종합센터	02-6496-546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0 (신설동), 한성빌딩 6층
	중랑주거안심종합센터	02-490-1700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65 (상봉동), 신내12단지 상가 1층
	성북주거안심종합센터	02-922-594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63-1 (보문동5가), BM빌딩 401호
	강북주거안심종합센터	02-980-4808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15 (수유동, 에피소드 수유 838), 에피소드 수유 838, 상가 407호
	도봉주거안심종합센터	02-6098-12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3길 61 (창동), 씨드큐브 창동 오피스 C동 2층
	노원주거안심종합센터	02-930-1180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23길 17 (상계동), 원터행복발전소 3층
	은평주거안심종합센터	02-388-2979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6길 26 (대조동), 2층
	서대문주거안심종합센터	02-303-373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101 (홍은동), 2층
	마포주거안심종합센터	02-6383-61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59 (망원동), 원전건물 5층 502호
	양천주거안심종합센터	02-6933-619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336 (목동), 협성빌딩 B동 3층
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	02-2661-0896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로 126, 삼정코아상가 1층 132호	
구로주거안심종합센터	02-853-9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길 86 (온수동), 승일빌딩 301호	
LH 공사 마이홈 상담 센터	금천주거안심종합센터	02-855-4522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B동 1608호
	영등포주거안심종합센터	02-785-70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47 (당산동1가), 3층 305호
	동작주거안심종합센터	02-816-168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6 (노량진동), 3층
	관악주거안심종합센터	02-875-3197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앙2길 16, 1층
	서초주거안심종합센터	02-6990-55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27(방배동, 청오빌딩), 4층
	강남주거안심종합센터	02-3453-227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역삼동), 유니온센터 1905호

구분	센터명	연락처	주소
	송파주거안심종합센터	02-400-2271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25길 10 (오금동), 하나빌딩 2층
	강동주거안심종합센터	02-6933-6870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6길 51 (상일동), 다올빌딩 6층
	서울 동부권 마이홈센터	02-6454-2789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동 28-9) 인의빌딩 1층
	서울 중부권 마이홈센터	02-6454-27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동 28-9) 인의빌딩 1층
	서울 서부권 마이홈센터	02-2169-88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07 (당산동3가 370-5) 인곡빌딩 1층
	서울 남부권 마이홈센터	02-2182-2787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14 (삼성동 141) 성원타워 1층
	인천북부권 마이홈센터	032-717-850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34 (주안동 300-3) 에이스빌딩 8층
	인천중부권 마이홈센터	032-717-85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34 (주안동 300-3) 에이스빌딩 8층
	인천남부권 마이홈센터	032-717-52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17번길 12 (구월동 1542-2) 두용프라자 6층
	부산권 마이홈센터	051-460-6814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초량동 1199-1) LH 부산울산지역본부 2층
	경북동부권 마이홈센터	053-280-475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4 무진빌딩 3층
	경북북부권 마이홈센터	054-851-9940	경상북도 안동시 광명로 166 한양빌딩 3층
	대구권 마이홈센터	053-603-2346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도원동 1445) LH 대구경북지역본부 1층
	광주권 마이홈센터	062-360-3128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치평동 1210) LH 광주전남지역본부 1층
	대전권 마이홈센터	042-470-081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둔산동 1380) LH 대전충남지역본부 1층
	울산권 마이홈센터	052-932-4802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 220 (달동) 대성웰라움 1층
	수원권 마이홈센터	031-323-913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6 (이의동 1329) 광교 안효빌딩 11층
	성남권 마이홈센터	031-778-31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92 (서현동 251-1 ) 야베스밸리 11층
	하남권 마이홈센터	031-622-2713~4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90-3 (망월동 1140) 모노라운지상가 1층
	의정부권 마이홈센터	031-822-4023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9층
	안양권 마이홈센터	031-467-572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 55 2층
	부천권 마이홈센터	032-450-825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1 동화빌딩 6층
	고양권 마이홈센터	031-927-303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기계동 5층

구분	센터명	연락처	주소
	남양주권 마이홈센터	031-590-6612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22-80 신해메디컬타워 4층
	오산권 마이홈센터	031-8092-5836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79번길 24 수청프라자 2층
	용인권 마이홈센터	031-280-471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기흥구 중동 842) 쉐네브스타월드 9층
	파주권 마이홈센터	031-934-5673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1004번길 33 (야당동 1041) 월드타워 8차 6층
	김포권 마이홈센터	031-8048-5303~4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9 하나썬시티 11층
	화성서부권 마이홈센터	031-821-0600	경기도 화성시 병점노을6로 30 6층
	춘천권 마이홈센터	033-258-41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337 (효자동 692-10) LH 강원지역본부 1층
	원주권 마이홈센터	033-737-775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양지로 26 (반곡동 1880-10) 원주원예농협 하나로마트 3층
	강릉권 마이홈센터	033-610-517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울곡로 2846 (옥천동 145) SH타워 2층
	충북남부권 마이홈센터	043-913-1828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0 청주수곡행복주택 2층
	충북동북부권 마이홈센터	043-820-9135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88 농협삼 관리동 3층
	청주권 마이홈센터	043-901-4512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성화동 936) LH충북지역본부 5층
	천안권 마이홈센터	041-538-5822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32 2층
	충남북부권 마이홈센터	041-854-8359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로 38 (신관동 599-1) 주원빌딩 3층
	전주권 마이홈센터	063-230-635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158 (효자동2가 1333-1) LH 전북지역본부 2층
	익산권 마이홈센터	063-840-091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3길 16-10 금오빌딩 5층
	목포권 마이홈센터	061-287-3340	전라남도 목포시 수문로 32 남교트윈스타 2층
	순천권 마이홈센터	061-900-4333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60 KT 북순천지사 3층
	창원권 마이홈센터	055-210-840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용호동 4-2) LH 경남지역본부 2층
	양산권 마이홈센터	055-362-7282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국민연금공단 양산회관 2층
	김해권 마이홈센터	055-907-8100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270 2층
	제주권 마이홈센터	064-720-109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LH 제주지역본부 1층



